

#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궁역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5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남궁역, 고광민, 김경훈,  
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 
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 
남창진, 박상혁, 박 석,  
신복자, 유만희, 이병윤,  
이봉준, 임춘대, 정준호,  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, 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- 또한, 도시녹지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해 협약체결, 물품 지원 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나무은행에 주택재건축, 재개발, 각종 정비사업시 이식된 수목을 녹지관리청은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)
- 나. 개인, 회사, 단체, 법인이 참여하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36조제3항)
- 다.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36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“도시녹화”라 함은”을 ““도시녹화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이라 함은 「도시」”을 “이란 「도시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“단일토지”라 함은”을 ““단일토지”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“나무은행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나무나눔”이란”으로, “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”을 “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”으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계약기간”을 “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계약기간”을 “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35조의 제목 “(나무은행)”을 “(나무나눔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각 녹지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”을 “시장은 녹화사업에 제공”으로 하

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재활용 수목의 이식을 위하여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6조제3항 중 “위촉장을 수여하여”를 “협약을 체결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드는 비용”을 “필요한 물품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도시녹화</u>”라 함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를 말한다.</p> <p>2. “<u>도시녹화계획</u>”이라 함은 공원 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</p> <p>3. “<u>녹지활용계약</u>”이라 함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.</p> <p>1. “<u>도시녹화</u>”란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또는 임상의 유지·보존 및 이  
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 
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.

4. “녹화계약”이라 함은 도시지역  
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  
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  
하고자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  
인 협력에 따라 시장과 체결하  
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.

5. “도시지역”이라 함은 「국토의  
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 
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, 같은  
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 
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  
한다.

6. “공공공익시설”이라 함은 「도  
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 
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 
따른 도시계획시설(세부시설을  
포함)을 말한다.

7. “단일토지”라 함은 1필지의 토  
지나 2필지 이상이 연결된 토지  
를 동일인(개인 또는 법인·단  
체)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  
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4. -----이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5. -----이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6. -----이란 「도시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7. “단일토지”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8. “나무은행”이라 함은 주택재건  
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  
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  
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 
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  
치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13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5년  
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최초  
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 
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7조(공고) ① (생 략)

제21조(유지관리 등) 시장은 계약기  
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 
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  
공하고 유지관리 한다.

제35조(나무은행) ① 녹지관리청은  
주택재건축·주택재개발 및 주거  
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  
계획(이하 “개발사업”이라 한다)  
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및 시  
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  
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

8. “나무나눔”이란 -----  
-----  
----- 발생  
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한 -  
-----  
-----.

제13조(계약기간) 녹지활용계약의  
계약기간-----. -----  
-----  
-----.

제17조(공고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21조(유지관리 등) ----- 녹지활용  
계약의 계약기간 -----  
-----  
-----.

제35조(나무나눔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녹지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36조(녹지의 실명관리) ①·② (생략)

③ 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④ 녹지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시장은 녹화사업에 제공-----  
-----.

② 시장은 재활용 수목의 이식을 위하여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녹지의 실명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협약을 체결하여-----.

④ -----  
-----  
--- 필요한 물품-----.

#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, 기증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다양하게 재활용하며, 도시녹지의 시민참여 관리를 위해 협약체결, 물품 지원 등에 대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도시녹화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35조 및 제36조	나무나눔	16,000

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[붙임 1] 2024년 나무나눔 사업설명서

□ 사업목적

- 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와 시민이 기증하는 나무 중 활용 가능한 나무를 옮겨심어 귀중한 녹화자원을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함

□ 사업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(나무은행)

□ 사업내용

- 위 치 : 서울시내 전역(자치구 및 사업소)
- 사업내용 : 기증수목 이식 지원
- 사업규모 : 수목 80주 이식
- 소요예산 : 16백만원
  - 자치구 및 사업소의 이식 신청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에 예산 재배정

□ 추진경위

- 재개발·재건축 등 각종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기증(이식)하여 보전하고자 '나무은행 운영' 사업 추진(2001~2023)
  - 적극적인 수목 활용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'사이버 나무은행' 개설(2004)
  -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 제정(2007)
  - '나무은행 운영'에서 '나무나눔'으로 사업명 변경(2012)